

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71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년 5월 2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‘서울핀테크랩 운영’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성장단계 핀테크 기업을 발굴·육성하고, 스케일업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으로,
- 나. 서울핀테크랩의 운영 목적 달성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규제 산업인 금융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동시에 엑셀러레이팅, 스케일업, 국내·외 네트워크 연계 등 창업기업 육성 경험이 요구되므로,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고자 함
- 다.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해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실시한 결과 ‘적정’으로 의결되었으며, 이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 무 명 : 서울핀테크랩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
-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18조

○ 추진 필요성

- 국내 최대 규모의 핀테크 허브인 서울핀테크랩을 관리하고 입주 기업들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,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위탁 운영이 필요함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(입주기업 관리) 모집·선정 및 평가, 공간 관리, 사용료 징수 등
- (스케일업 지원) 성장단계 기업의 스케일업 전략 수립 등 지원
- (글로벌 진출 지원) 해외 IR 개최, 글로벌 박람회 참가 등
- (규제 개선 지원) 금감원 연계 멘토링, 규제혁신 TF 운영 등
- (오픈이노베이션 운영) 대기업·금융사 공동 서비스 개발 연계
- (투자유치 지원) 1:1 밋업 및 데모데이 개최, IR 컨설팅 등
- (네트워크 구축) 국내·외 금융사·투자사·유관기관 등 네트워크 확보
- (성과조사) 입주 및 졸업기업 성과조사, 우수 사례 발굴 등
- (시설관리)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의무이행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위워크 여의도역점 4·5·6·8·17·19층

- 시설규모 : 총 11,673 m^2 (전용면적 4,683 m^2)
- 지원시설 : 기업 사무공간, 회의실, 교육장, 공용라운지 등
- 위 치 도



마. 위탁기간 : 3년('27.1.~'29.12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1,404,609천원('26년 기준)
- 산출근거
 - 인건비 567,378천원, 운영비 101,854천원, 사업비 685,404천원, 이윤 등 기타 49,973천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〉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 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.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...

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〈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〉

제17조(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) ① 시장은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.

1. 서울 금융중심지 내 국내외 금융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
2. 금융기관 및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설
3.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

⋮

제18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나. 예산조치 : 2027년 민간위탁금 편성(예정)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경제실 금융투자과 이루다 (☎2133-5249)